

내용 증명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미납금 청구]

수신인 : 임창숙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97 번길 34(가능동) 102 호

연락처 : 010-4034-2527

발신인 : 김춘자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779-53

연락처 : 010-7767-4981

본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97 번길 34(가능동) 102 호의 임대인으로 2010 년 4 월 5 일부터 수신인 임창숙과 보증금 이백만원(2,000,000 원), 매월 5 일 월차임 이십만원(200,000 원)을 지급받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수신인은 2021 년 11 월 29 일까지 일천칠십오만구천원(10,759,000 원)의 월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본인은 충분한 여유를 드렸으나 협조하지 않았기에 민법 제 640 조에 의거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는 바이고, 차후 아래 사항을 진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로 인해 귀하는 법률상으로 상기 건물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2. 본인은 법률 사무소를 통해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귀하에게 소송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3.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송 비용, 미납 월차임, 법정이자, 그리고 부동산 강제 집행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될 것입니다.
4. 건물 내부를 확인하여 상기 건물에 고의로 파손한 부분이 있으면 실비로 수리비를 청구할 것이며 밀린 차임과 공과금 및 건물 원상복구에 관한 비용이 귀하에게 청구될 것입니다.

본인도 어려운 시기에 본 서면을 보내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월차임 지급을 수차례 미루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고충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도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큼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 수신 후 1 주 내로 현재까지 밀린 차임을 모두 입금한다면 모든 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최고합니다.

2021. 11. 29

발신인 김춘자